

문서번호 : 20 - 1207 - 사무처 - 01

수 신 : 모든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제 목 :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민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 발표

전송일자 : 2020. 12. 7.

전송매수 : 총 2 매

##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민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 발표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정기회인 제382회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야 모두 자기 셈법에 바쁜 모양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갈등은 국회로 옮겨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별 법률심사도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개혁입법의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출범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일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러 개혁입법 과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지난 20대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2016년 가을에서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헌정사 최초로 국정농단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이끌어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2/3이상,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인만큼, 21대 국회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개혁입법과제의 실질적 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는 국회가 21대 국회에 부여한 엄중한 과제이다.

21대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열

마 남지 않은 지금 해당 법률안들은 재계 등 기득권들의 반대 혹은 여/야의 정쟁 및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올 해가 가기 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21대 국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 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1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21대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10대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10대 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

- 하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 셋, 무늬만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후퇴 없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제정하라.
- 넷,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다섯, 경제민주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 여섯,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 일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 여덟,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 아홉,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라.
- 열,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 3대 과제’ 처리를 촉구한다.

※각 과제별 세부내용은 아래 별지 참고.

2020.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별지]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

### 하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권은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본권이자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이다. 세계 각국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대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101116)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부 영역에서 차별을 허용하는 법안은 결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한다.

### 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근본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평화를 위한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특히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규민 의원 발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605)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과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개정을 검토했던 내용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일부 조항에 한정된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 셋, 무늬만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후퇴 없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제정하라

사법농단 이후 국회는 관련법관의 탄핵을 공언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사법행정의 권력화 및 재판에 대한 우위, 법원과 법관의 관료적 구조가 혁파되지 않고서는 재판독립은 여전히 위태롭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적 관료구조의 해체,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의 설치 등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는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재판독립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458)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다양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법행정의 개혁과 함께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이고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대법관과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올해 국회를 통과한 미확정 민사판결의 공개 외에 미확정 형사판결의 공개도 서둘러야 한다. 판결문의 공개 없이는 특권적 정보독점, 전관예우가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기울어진 추를 고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증거개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재판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진행이 공개·기록되어야 한다. 공개재판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포함한 후퇴 없는 개혁입법의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를 통한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 폐지와 업무 축소 및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입법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목표에서 너무 많이 후퇴했다. 독자적 조직이 없는 명패 바꾸기식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현상 유지, 국정원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겉으로는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변한 것이 전혀 없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후퇴 없는 실질적인 사법개혁, 권력기관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 **넷,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을 비롯해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어느 누구도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는 없다.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현장의 위험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 주체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산재사고의 책임이 사업주와 원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람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 **다섯, 경제민주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헌법에서 선언한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경제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대기업 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을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적 남용이 줄어들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그동안 손쉽게 누렸던 특권이 사라지는 재벌과 대기업은 반발할 것이다. 기득권이 반대한다고 하여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얼마 전 재계의 반발로 여당이 공정경제3법의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경제개혁이 재계가 때 쓴다고 나약해진다면 이것은 결국 처음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의심할 수 밖

에 없다. 공정경제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 **여섯,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입법예고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사건, 라임 사태 등 금융피해자 사건과 같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그동안 여러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징벌배상제를 상법 개정을 통해 상행위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로 확장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마련된 것도 의미가 있다. 집단소송제와 상행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결합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일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시작된 사학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시급히 시정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권고하였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 이제 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안이 25개가 넘는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특히 비위 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로 쉽게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여덟,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의 후속 입법으로 국회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였고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여성에게 감당하게 하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낙태죄 조항을 유지하고 허용 한계 조항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입법시한인 내에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라.**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의 75%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아동복지법 등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친권자의 체벌이 허용되는 듯이 오인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정부에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정부발의법안(▲의안번호 4530)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동학대사건 근절을 위해 위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한다.

**열,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 3대 과제’ 처리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156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 연장, 봉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개정을 약속했다. 10만명의 국민이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3대과제’ 즉,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권 부여, 조사기간 연장, 조사인원 확충, 공소시효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결의안’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끝.